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정원 9명(6급 3명, 7급 6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6명(5급 6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86명(5급 16명, 6급 35명, 7급 3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기술직군 정원 8명(전산서기보 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별표6의2의 정원 중 “26명”을 “35명”으로,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을 “8명”으로,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을 “7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별표10의2의 정원 중 “107명”을 “105명”으로, 6급 “47명”을 “49명”으로 8급 “57명”을 “53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을 “29”로, 세무주사 “228”을 “229”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사무관 “30”을 “29”로, 세무주사 “228”을 “229”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899”를 “908”로, 일반직 계 “895”를 “904”로, 행정사무관 “31”을 “30”으로, 세무주사 “237”을 “238”로,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를 “8”로, 운전주사 “1”을 “2”로,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를 “11”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사무관 “1,088”을 “1,089”로, 세무주사 “4,506”을 “4,505”로, 전산서기보 “41”을 “49”로, 사무운영서기보 “277”을 “269”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981”을 각각 “19,979”로, 행정사무관 “1,105”를 “1,106”으로, 세무주사 “4,566”을 “4,567”로, 세무서기 “5,243”을 “5,239”로, 전산서기보 “41”을 “49”로, 사무운영서기보 “277”을 “26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 정원 15명(세무주사 15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4명(세무서기 4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53명(세무서기 5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9명(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9명(공업주사 또는 세무주사 3명,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6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4명(세무주사 4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주사보 1명)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7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보 1명 및 세무주사보·공업주 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 사 6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한다.	② ----- -----정원 1명(세무주사 보 1명)은 ----- -----.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2명(세무주사 15명, 세무서기 57명)은 각각 2025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삭 제>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및 106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및 106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은 20
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4명(세무주사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
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
(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35
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u>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을 제외한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u>	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① (현행과 같음) <삭제>
---	--

<u>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u> <u>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 및</u> <u>별표 10의2의 정원 10명</u> <u>(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u> <u>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u> <u>으로 본다.</u>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사무관	·		·	·	-1
	·		·	·	
			<u>30</u>	<u>29</u>	
세무주사	·		·	·	+1
	·		·	·	
			<u>228</u>	<u>229</u>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899</u>		<u>908</u>	+9	
일반직 계	.		.		.		
	.		.		.		
			<u>895</u>		<u>904</u>	+9	
행정사무관	.		.		.		
	.		.		.		
			<u>31</u>		<u>30</u>	-1	
세무주사	.		.		.		
	.		.		.		
			<u>237</u>		<u>238</u>	+1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		.		.		
	.		.		.		
			<u>5</u>		<u>8</u>	+3	
운전주사	.		.		.		
	.		.		.		
			<u>1</u>		<u>2</u>	+1	
	.		.		.		
	.		.		.		

세 무 주 사 보 · 공 업 주 사 보 또는 시설주사보	<u>5</u>	<u>11</u>	+6
·	·	·	
·	·	·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088</u>		<u>1,089</u>	+1	
	.		.		.		
	.		.		.		
세무주사			<u>4,506</u>		<u>4,505</u>	-1	
	.		.		.		
	.		.		.		
전산서기보			<u>41</u>		<u>49</u>	+8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77</u>		<u>269</u>	-8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9,981</u>	• <u>19,979</u>	-2
일반직 계	<u>19,981</u>	<u>19,979</u>	-2
•	•	•	
•	•	•	
행정사무관	<u>1,105</u>	<u>1,106</u>	+1
•	•	•	
•	•	•	
세무주사	<u>4,566</u>	<u>4,567</u>	+1
•	•	•	
•	•	•	
세무서기	<u>5,243</u>	<u>5,239</u>	-4
•	•	•	
•	•	•	
전산서기보	<u>41</u>	<u>49</u>	+8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77</u>	<u>269</u>	-8
•	•	•	